

춘천지방법원 2021. 4. 8 선고 2020나5260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3. 11.

판 결 선 고 2021. 4. 8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6. 5. 선고 2019가단2642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D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. 12.

10. 접수 제712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‘2. 추가판단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D영농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85817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어 그 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를 마쳐준 것이고,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판 단

1)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D영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[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4890(본소), 15968(반소), 서울고등법원 2011나85187(본소), 85194(반소)]에서 피고의 D영농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(이하 ‘이 사건 확정판결’이라 한다)이 선고되었고, 위 판결은 2013. 6. 18. 확정된 사실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(등기일: 2010. 12. 24.), 근저당권설정등기(등기일: 2010. 12. 24.) 및 소유권이전등기(등기일: 2011. 6. 16.)는 2014. 11. 28.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)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영농은 이 사건 확정판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. 이후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만 D영농으로 회복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

처분권한까지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. 따라서 D영농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, 그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, 판사 송종선, 판사 이은상